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6. 27 선고 2023가단117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웅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종윤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인

담당변호사 오주석

변 론 종 결 2024. 3. 21.

판 결 선 고 2024. 6. 27.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2. 8. 2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22. 9. 8. 접수 제138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로부터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함에 있어 할부금 납입보증을 위하여 원고(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와 1995. 9. 28.경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가 위 할부금 납입을 연체하여 원고는 D의 청구에 따라 1997. 8. 14. D에 2,753,5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9220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28. 'C는 원고에게 11,735,030원 및 그 중 2,753,5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5. 19. 확정되었다(이하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2. 8. 26.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로는 C, G, H가 있는데, 피고의 법정상속분은 3/9, C, G, H의 법정상속분은 각 2/9이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22. 8. 26.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9. 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성군청,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생긴 채권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관한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의 재산상황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오래 전부터 거주하던 곳이어서 피고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피고 단독 소유로 한 것일 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행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소화영

별지